

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 : 박선미 의원

제출일 : 2026. 3.

1. 제안이유

- 가. 국악을 보전·계승하고 이를 육성·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「국악진흥법」이 제정, 시행(2024. 7. 26.) 중임.
- 나. 이에 따라 하남시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사업 및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단체의 육성·지원 및 위탁(안 제6조 및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조례안은 「국악진흥법」 제정·시행에 따라 하남시 국악의 보전·계승과 육성·진흥,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특히, 시장의 책무, 국악 진흥 및 향유문화 활성화 사업, 관련 단체의 육성·지원,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.
- 검토 결과,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국악 진흥 및

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, 향후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범위와 방식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